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】

의 안 번 호 367

2024. 1. 25. 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. 16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. 1. 16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1. 16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추진근거
 -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(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)
 -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 -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· 운영요령 제20조(재산의 관리)
- 필요성
 - 대형마트, SSM 등의 골목상권 무분별한 진입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함
 - 특히,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한 기관(단체)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중소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〈위탁사무 내용〉

- 물류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"시"의 사전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업
-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"시"가 요구하는 사항

〈위탁시설 개요〉

○ 시설개요

시	설	명	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
소	재	지	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411번길 49(가곡리 316-5외 5필지)
시	설 규	모	토지면적 : 6,446㎡, 건축연면적 : 2,257㎡(지상3층)
운	영 인	력	3명(상무이사1, 총무관리부 1, 사업부 1)
사	업 내	용	상품의 보관·배송·포장 등 공동물류, 공동도매 사업

○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



○ 민간위탁 기간 : 2023. 6. 1. ~ 2027. 5. 31.

〈수탁기관 선정방식〉

- 협약에 의한 관리운영 위탁 (수의계약)
 - (근거)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7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위탁

【유통산업발전법】

제17조2(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1. 중소유통기업자단체
- (2023. 05. 26.) 남양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심의

▶ 심의안건 : 남양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위·수탁 협약

▶ 수 탁 자 : 경기동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

▶ 심의결과 : 원안가결

〈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〉

○ 해당사항 없음(물류센터는 중소유통사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운영 관련 예산지원은 없음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동의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7조의2 및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구매·배송·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'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'관리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(사후)를 구하는 사항으로,
-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의 경험, 정보, 인적・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대규모 마트 입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가격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별도의 위탁에 따른소요비용은 없습니다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- 5. 토론요지
 - 없 음
- 6. 심사결과
 - ○「원안가결」
- 7. 소수의견 요지
 - 없 음

붙임: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부.